

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84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5월 2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 증액으로 2025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
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변경내역 : 총 1개 정책사업(재무활동), 678백만원 증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조정내역			
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체육진흥기금	14,290	14,968	678	4.7
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	10,987	10,987	-	-
시민생활체육 진흥	1,196	1,196	-	-
일반예산(재무활동)	2,097	2,775	678	32.3
보전지출	2,097	2,775	678	32.3
여유자금 예치	2,097	2,775	678	32.3
행정운영경비	10	10	-	-

나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〈수입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	변경
계	14,290	14,968
이자수입	2,337	2,337
전입금	7,388	7,388
예치금회수	4,565	5,243

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	변경
계	14,290	14,968
비용자성사업비	12,183	12,183
기본경비	10	10
여유자금예치	2,097	2,775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김민주 (☎ 2133-2679)